

「국도 유지·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

1. 개정 이유

국도의 유지·보수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국도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도관리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 마련 등 (안 제13조2항, 별지 제24호 서식)

- 도로보수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장에 출입을 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
- 작업 투입 전, 교통안전시설 작동 및 개인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'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'를 마련
 - 사전점검에 활용한 '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'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

나. 안전관리자 임무 구체화(안 제18조)

- 현행 규정은 국도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

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

- 개인안전장구 착용여부 등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
- 이에,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
- 안전관리자 점검사항으로 ①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, ②교통통제 시설 작동상태 및 위치적절성, ③작업 전·후 안전관리 상태 등을 명시

다. 안전교육 의무화 (안 제20조)

- 국토관리원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(연 2회 이상)과 자체교육(월 1회 이상) 의무화 규정 마련

라. 안전관리 실태점검 (안 제21조)

- 도로보수원에 대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실태점검 (연 1회 이상) 의무화 규정을 마련
- 청장(지방청장)은 기관장(국토사무소장)에 대하여 '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' 작성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도유지·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

기존 국도 유지·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관장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국도관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작업 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.

제18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 내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차량에게 사고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1. 국도관리원의 복장상태,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여부
 2. 경고등, 작업 보호차량, 도류화 시설, 안내표지 등 교통 통제시설의 작동상태 및 위치 적절성
 3. 국도관리원의 건강 상태
 4. 작업준비 및 철거 시 국도관리원의 대기 위치, 작업 보호차량, 신호수 배치 여부 등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안전교육) 기관장은 국토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, 자체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실태점검) 청장은 기관장에 대하여 도로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여부,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국토관리원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<별지 제24호서식>

도로 작업 전 안전관리 점검표

관리번호 :				담당 보수과장: (인)			
작업명 :				총투입인원	도로보수원	신호수	조종원
노선명 : 구간 : ~					작업시간 :	기상상태 :	
1. 공사유형 구분				4. 투입원 건강 및 개인 장구 상태 점검			
고정공사	장기 (3일초과)	본선 <input type="checkbox"/>	()차로 중 ()차로	투입원 건강 상태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
		길어깨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	중기 (1~3일)	본선 <input type="checkbox"/>	()차로 중 ()차로	투입원 안전장구 상태	복장 (안전조끼)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
		길어깨 <input type="checkbox"/>			안전모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
	단기 (1일 이내, 야간)	본선 <input type="checkbox"/>	()차로 중 ()차로		안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
		길어깨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	단시간 (1시간 이내)	본선 <input type="checkbox"/>	()차로 중 ()차로				
		길어깨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
이동작업	본 선 <input type="checkbox"/>	()차로 중 ()차로	안전장구	경고물품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
	길어깨 <input type="checkbox"/>			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
해당 작업구간 교통관리 방안 번호 기입 (도로작업구간 안전 매뉴얼 참조)					
2. 작업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검토 (적절성: 확인, 해당없음:X)			5. 관할 경찰서 협조 여부		
작업구간 교통관리 방안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	도로 공사 신고 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예외
교통관리	안전표지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미신고 사유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N)		신고예외 유형 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고예외)
	작업보호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	도류화시설 (교통콘)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<input type="checkbox"/> 낙하물 수거 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청소 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 민원처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신호수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	로봇신호수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3. 안전시설·장비 유지관리 점검 (상태점검: 확인, 해당없음:X)			6. 기타소견		
안전표지 상태 (오염, 파손, 망실 등)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도류화 시설 상태 (파손, 망실 등)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작업보호자동차	트럭 장착 완충시설 상태(파손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	점멸차단판(싸인보드) 작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	경고등 작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	기타 시설 상태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기타장비(경고물품, 깃발 등) 상태	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X			

부 칙

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국도관리원의 운용) 기관장은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관리원을 작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13조(국도관리원의 운용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관장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국도관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작업 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.</p>
<p>제18조(안전관리자 임명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안전관리자는 <u>항상 공사현장내의 안전사항을</u>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<u>하여야한다.</u>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18조(안전관리자 임명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안전관리자는 <u>공사현장내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</u>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<u>하여야하며,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차량에게 사고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</u> 취하여야한다.</p> <p>1. <u>국도관리원의 복장상태,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</u></p>

< 신 설 >

< 신 설 >

구 착용 여부

2. 경고등, 작업 보호차량, 도류
화 시설, 안내표지 등 교통 통
제시설의 작동상태 및 위치 적
절성

3. 국도관리원의 건강 상태

4. 작업준비 및 철거 시 국도관
리원의 대기 위치, 작업 보호
차량, 신호수 배치 여부 등

제20조(안전교육) 기관장은 국도
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
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을 연
2회 이상, 자체교육을 매월 1회
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실태점검) 청장은 기관장
에 대하여 도로 작업 전 안전관
리 점검표 작성 여부, 안전교육
실시 여부 등 국도관리원의 안
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연 1회
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
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
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